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192
------------	-------

발의연월일 : 2018. 1. 2.

발의자 : 정춘숙 · 김병욱 · 양승조
김상희 · 윤소하 · 남인순
김종대 · 추미애 · 이철희
기동민 · 정성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등이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처분을 대신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16만4천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3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 억원에 이르는 설치·조성자 및 영업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

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처분을 대신하여 3천만원 이하의”를 “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